

의안번호	제378호
의결연월일	2017. 7. 20

-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7. 13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7. 14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7. 20

제232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실장 : 홍 석 모)

가. 제안이유

-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을 예산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일치시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포괄기금 재무관 및 지출원 변경(안 제7조제1항)

구분	현행	개정
기금재무관	재무과장	재무과장, 직속기관 회계업무담당과장
기금지출원	경리팀장	경리팀장, 직속기관 경리업무팀장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- 이 조례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을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일치시켜 농업기술센터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제7조제1항 제3호 중 “재무과장” 을 “재무과장,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과장” 으로, 같은 항 제5호 중 “경리팀장” 을 “경리팀장, 직속기관 경리업무팀장” 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**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